

(보건사회부령 제 607 호)
1978. 9. 1. 공 포

公務員 및 私立學校教職員 醫療保險法施行規則

< 全 文 >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이하 「령」 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신고) ①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는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자격취득신고서 2 부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 1 항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에는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3 조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신고) ①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 2 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로부터 제 7 조의 피보험자증 및 제 11 조의 원격지 피부양자증을 회수하여 영 제 55 조의 피보험자 건강진단 카아드와 함께 이를 제 1 항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4 조 (피부양자의 신고) ① 피보험자는 피부양

보사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醫療保險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醫療保險法 시행규칙」을 9월 1 일자로 보건사회부령 제 607 호로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의 成案과정에서 보사부는 요양취급기관의 개별指定을 지양하고 公團이 醫師會등에 일괄 指定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었으나 法制處의 심의과정에서 公團이 指定통보를 의료관계단체에 위탁하여 할 수 있도록 조항文句가 修正되었으며 의료기관의 진료능력, 환자의 발생수, 기타 사정으로 보험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역을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指定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진료비의 概算拮制적용에 있어서 概算給에 의한 지급액과 심사지급결정액과의 精算差額은 次期分 진료비청구액과 相計토록된 原案의 취지는 그대로 두었다. < 編輯者 · 註 >

자가 있게 된 때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피부양자 신고서 2 부를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를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피부양자 신고서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동거하지 아니하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피보험자 자격득실의 통지) 공단은 법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 6 조 (근무처 변경 통보) ① 공무원인 피보험자가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진출되는 경우에는 진출전의 기관장은 지체없이 영 제 54 조의 피보험자 카아드 및 영 제 55 조의 피보험자가 건강진단 카아드를 전입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전입기관장은 7 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은 영 제 32 조 제 1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7 조 (피보험자증의 교부) 공단은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에 관하여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서식에 의한 피보험자증을 작성하여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를 거쳐 피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피보험자증의 기재사항 변경) 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피보험자증 및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를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한 피보험자증을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를 거쳐 피보험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피보험자증의 재교부) 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증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증 재교부 신청서에 피보험자증 (멸실의 경우에는 사유서) 을 첨부하여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를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 1 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증을 새로 작성하여 이를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를 거쳐 피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피보험자증의 검인등)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증을 검인 또는 갱신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피보험자증의 검인 또는 갱신을 하기 위하여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에게 피보험자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증의 제출을 받아 이를 공단에 송부 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피보험자증을 검인 또는 갱신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피보험자증을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를 거쳐 피보험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 피보험자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11 조 (원격지 피부양자증의 교부신청등) ① 공단은 피보험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피부양자의 진료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원격지 피부양자증을 교부할 수 있고, 피부양자는 원격지 피부양자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이를 피보험자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 8 조 내지 제 10 조의 규정은 원격지 피보험자증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2 조 (교직원인 피보험자의 보수액의 정기신고) 학교 경영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그 학교에 근무하는 피보험자 (그해 3월 2일 이후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자는 제외한다) 의 보수월액을 기재한 교직원 보수액 신고서 2부를 6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교직원인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시의 보수액의 신고) 학교 경영자는 교직원으로서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피보험자의 보수월액을 기재한 자격취득시 보수액 신고서 2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표준월급여액 결정승인신청) 공단은 영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월급여액의 결정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교직원 표준월급여액 결정 승인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교직원 표준월급여액의 결정 및 통보) ① 공단은 영 제 16 조 내지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표준월급여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교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는 수당의 결정승인 신청) 공단은 영 제 9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인 피보험자의 보수월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수당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당해 학교의 보수지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정관변경 인가신청) 공단은 법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요양급여등의 수급) ①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법 제 27 조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요양급여 또는 법 제 28 조의 분담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피보험자증을 요양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증의 분실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 이었던 자가 법 제 30 조 제 1 항 또는 법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상실후의 요양급여 또는 분담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 20 조 또는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증명서를 요양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상실후의 요양급여 또는 분담급여를 신청중에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 1 항 단서 또는 제 2 항의 단서의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피보험자, 피부양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증 또는 급여증명서를 요양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요양취급기관은 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피보험자증에 진료를 받은 자의 성명 진료비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간호 또는 이송의, 요양급여 인정신청등) 영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 또는 이송의 요양급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요양급여의 개시전에 간호·이송 요양급여 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자격상실후의 계속 요양급여신청) ①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상실후의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자격상실 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계속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 1 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자격상실후의 분담급여등의 신청) ①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상실후의 분담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담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 1 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③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상실후의 분담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요양취급기관의 지정) ①공단은 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취급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진료능력, 환자의 발생수, 기타 사정으로 보험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의료지역을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공단은 요양취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등에 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지정의 통보를 의료관계단체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 23 조 (요양취급기관지정의 취소) 공단은 요양취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를 명백히 하여 해당 요양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요양비 지급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법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요양비 청구서에 요양을 담당한 의료기관등이 발행하는 진료비 명세서 및 요양취급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접수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분담비 지급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법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분담비청구서에 분담(사산을 포함한다)의 사실에 관하여 시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이나 의사 또는 조산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공무상 요양 승인등의 통지) 총무처장관 또는 사립학교 교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무원 연금법 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하「연금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교직원에 대한 공무상 또는 직무상요양(이하「공무상 요양」이라 한다)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부분 1 부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27 조 (진료비의 청구) 요양취급기관의 요양급

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 (이하 「진료비」라 한다)의 청구는 월별로 하되, 진료비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요양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 ①공단은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심사에 의하여 결정된 진료비의 총액에서 법 제 38 조 및 영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심사지급 결정액」이라 한다)을 그 요양 취급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심사의 결과 이미 지급된 본인 일부 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심사지급결정액에서 그 과다하게 지급된 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 2 항 단서의 경우 공단은 그 심사 내역과 공제내역을 요양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9 조 (진료비 지급의 특례) ①공단은 제 2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청구액 전액을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개산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그 개산금에 의한 지급액과 심사지급결정액과의 정산차액은 이를 다음기분 진료비청구액과 상계한다.

제 30 조 (공무상 요양에 관한 비용의 청구) 공단은 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질병, 부상에 관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되 공무상 진료비 청구서에 진료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총무처장관 또는 사립학교 교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장제비의 지급신청)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여 그 장제를 행하는 자가 법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장제비 지급신청서에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급여제한의 통지) 공단은 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제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3 조 (제 3 자의 행위에 의한 질병등의 신고) 피보험자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요양급여 사유의 발생이 제 3 자의 행위로 인한 때에는 그 제 3 자의 성명·주소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질병 또는 부상의 상황을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 (보험료 납입의 통지) 보험료의 납부의 무지는 보험료를 납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험료 납입 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담자별 보험료 납입액 내역
2. 보험료의 감면내역

제 35 조 (국고부담금의 교부등) 공단은 법 제 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로부터 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분기별로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산출내역을 기재한 국고부담금 교부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 5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차입금 사용계획서 및 상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 조 (준비금의 사용승인 신청) 공단은 영 제 4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사용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준비금 사용승인신청서에 준비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8 조 (승인을 받아야 할 공단의 운영규정) 법 제 70 조 및 영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공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규정
2. 조직규정
3. 인사규정
4. 임직원의 보수규정
5. 진료비 심사 및 지급규정
6. 진료비 심사위원회 규정

< 9 면에 계속 >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러므로 병원의 치료 TEAM MEMBER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

임상사목교육은 원목을 발전시킬 뿐아니라 성직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므로 많은 도움이 된다. 가톨릭병원마다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 환자와 직원들에게 뛰어난 사목적 service를 주면서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 17 면에서 >

앞으로 国家的인 医療保健組織網設置에 있어서는 国公立이나 民間의 区别없이 現存 機關을 中心으로 이를 補強 發展시키는 것이 時間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또는 人的 資源의 活用에 있어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面에 開業하고 있는 醫師가 있는 경우 面 保健診療의 機能을 위하여 다시 醫師를 配置할 것이 아니라 그 醫師로 하여금 面的 保健診療를 担当하도록 委任하여야 할 것이다.

發展하는 社会속에서 医療保健은 個人에서부터 모든 國民으로 家族에서부터 地域社会로 擴大되었고 村落에서 都市에 이르기까지 一貫된 傳達体系의 樹立이 期待되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 医療人은 어느 時代보다도 어려움과 同時에 큰 任務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 24 면에서 >

7. 진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규정 제 39조(서류의 보존기간)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는 공무원 또는 교직원의 의료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0조(서식) 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청구서, 신청서, 신고서등의 서식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공무원 및 교직원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는 제 2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8년 10월 31일까지 하되, 피보험자 카아의 작성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교직원인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시의 보수월액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자격취득시의 보수월액신고는 제 13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8년 10월 31일까지 하되, 동년 9월분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피보험자 건강진단 카아의 대체)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공무원 및 교직원에 대해 피보험자 건강진단 카아드는 연금법에 의한 건강카아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